

(20) 지방세 지출보고서(2018년도 실적기준)

I. 지방세 비과세·감면 현황 개요

1. 비과세·감면 총괄표

(단위: 원, %)

구 분	'18년(결산)
비과세·감면액(A)	1,461,198,400,600
비과세	251,117,088,760
감면	1,210,081,311,840
지방세 징수액(B)	12,119,638,983,898
비과세·감면율(A/A+B)	10.8

2. 기능별 비과세·감면 현황

(단위: 원, %)

분 야		'18년(결산)	비중
총 계		1,461,198,400,600	100
1	일반공공행정	121,846,730,960	8.3
2	공공질서 및 안전	245,129,040	0.0
3	교육	16,535,265,000	1.1
4	문화 및 관광	30,341,379,070	2.1
5	환경보호	5,837,599,880	0.4
6	사회복지	297,123,434,600	20.3
7	보건	2,989,591,430	0.2
8	농림해양수산	39,815,405,090	2.7
9	산업·중소기업	463,272,567,960	31.7
10	수송 및 교통	108,195,956,390	7.4
11	국토 및 지역개발	207,329,050,180	14.2
12	과학기술	4,059,140	0.0
13	국가	70,621,516,960	4.8
14	외국	1,534,450	0.0
15	기타	97,039,180,450	6.6

3. 세목별 비과세 · 감면 현황

(단위: 원, %)

분 야	'18년(결산)	비중
총 계	1,461,198,400,600	100
보통세	1,428,438,828,040	97.8
취득세	1,418,002,008,220	97.0
등록면허세	10,436,819,820	0.7
목적세	32,759,572,560	2.2
지역자원시설세	32,759,410,630	2.2
지방교육세	161,930	0.0

4. 비과세 · 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

(단위: 원)

감 면 유 형	'17년(결산)	'18년(결산)	증감액
매대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	252,022,945,770	324,687,489,940	72,664,544,170
임대주택에 대한 감면	149,530,007,720	223,801,470,600	74,271,462,880
산업단지에 대한 감면	201,900,499,900	137,970,811,850	-63,929,688,050
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	46,742,755,750	63,424,919,170	16,682,163,420
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	66,877,072,820	58,426,404,640	-8,450,668,180
국가에 대한 비과세	38,157,223,660	55,040,109,890	16,882,886,230
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	40,694,238,270	49,788,488,450	9,094,250,180
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	47,323,770,600	46,265,442,440	-1,058,328,160
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	21,776,992,690	41,854,358,040	20,077,365,350
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	31,877,415,440	34,144,020,510	2,266,605,070
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	32,424,227,590	31,823,107,750	-601,119,840
종교,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	29,610,928,710	29,115,511,300	-495,417,410

II. 지방세 비과세 ·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

1. 일반공공행정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일반공공행정		합 계	121,846,730,960
1	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자동차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109① 1호, §145① 1호, §145②) - 지방자치단체가 국방, 경호, 경비, 교통순찰, 소방, 환자수송, 청소,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1·2호)	소 계	63,424,919,170
		취 득 세	53,777,050,440
		등록면허세	224,057,900
		지역자원시설세	9,423,810,830
2	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②) -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73의2①)	소 계	34,144,020,510
		취 득 세	34,144,020,510
3	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·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·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	소 계	91,974,310
		지역자원시설세	91,974,310
4	정당에 대한 비과세 - 정당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9①·②·③)	소 계	274,190
		지역자원시설세	274,190
5	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-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§90①, §90②)	소 계	473,991,030
		취 득 세	367,048,770
		등록면허세	845,500
		지역자원시설세	106,096,760
6	사유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·묘지에 대한 비과세 -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3호) -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·묘지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③ 1호, §145②)	소 계	965,840
		지역자원시설세	965,84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7	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- 지방공사·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의2①②) -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, 재단 법인에 대한 취득·재산·등록면허세 감면(50%)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의2③) -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감면(50%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의2④)	소 계	23,710,585,910
		취 득 세	23,404,576,790
		등록면허세	306,009,120

2. 공공질서 및 안전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공공질서 및 안전		합 계	245,129,040
8	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- 천재·지변·소실·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·선박·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레저·주민·재산·자동차·지방소득·담배소비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4④, §92① 1호, §92②·③) -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(지방세법 §9⑦)	소 계	245,128,520
		취 득 세	245,053,520
		등록면허세	75,000
9	재해구조 및 재해구호를 위한 과세특례 - 비상재해구조용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45②) - (경기 파주) 전국재해구호협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	소 계	520
		지역자원시설세	520

3. 교육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교 육		합 계	16,535,265,000
10	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-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세·재산·지방소득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	소 계	3,514,991,480
		취 득 세	1,052,477,07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	§90, §109① 1호, §145① 1호, §145②)	등록면허세	1,669,500
		지역자원시설세	2,460,844,910
11	교육자치단체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- 교육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비과세(지방세법 §9②)	소 계	288,963,200
		취 득 세	288,963,200
12	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-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	소 계	1,373,330
		지역자원시설세	1,373,330
13	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-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①, §41②, §41③, §41⑤) -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·실습용 차량·기계장비·항공기·입목·선박에 대하여 취득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2①, §42②) -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⑥) -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·재산세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⑦) - 유치원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9)	소 계	11,548,555,050
		취 득 세	7,591,762,610
		등록면허세	10,408,000
		지역자원시설세	3,946,384,440
14	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-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 제공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④)	소 계	314,400
		지역자원시설세	314,400
15	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-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특례제한법 §43①, §43②, §43③, §44)	소 계	285,073,140
		취 득 세	169,226,640
		등록면허세	493,500
		지역자원시설세	115,353,00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16	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- 학술연구단체, 장학단체, 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①) -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②) -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의2)	소 계	895,994,400
		취 득 세	762,051,540
		지역자원시설세	133,942,860

4. 문화 및 관광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문화 및 관광		합 계	30,341,379,070
17	종교·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- 종교·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0①, §50②, §50③, §50⑤, §50⑥) -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④)	소 계	29,115,511,300
		취 득 세	25,007,045,700
		등록면허세	3,611,000
		지역자원시설세	4,104,854,600
18	종교·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- 종교·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50④)	소 계	175,260
		지역자원시설세	175,260
19	문화·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- 정부 인·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2①) - 도서관의 취득세는 경감, 도서관의 등기·등록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는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2②) - 박물관·미술관·도서관·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4)	소 계	397,802,430
		취 득 세	334,557,950
		등록면허세	80,400
		지역자원시설세	63,164,08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서울 종로구) 인사동·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- (서울) 공연장에 대한 취득·등록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- (경기, 양주) 양주 장흥 문화·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, 재산세 감면 - (제주) 공연장 설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		
20	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	소 계	827,870,73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54①) - 평창군에 위치한 대회직접관련시설 중 선수촌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중과배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4⑥) 	취 득 세	827,870,730
21	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	소 계	19,35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3) 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5①) 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5②) - 국보,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(조례) - (서울 종로)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 - (서울 성북) 등록 한옥 주택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감면 -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-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 	지역자원시설세	19,350

5. 환경보호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환경보호		합 계	5,837,599,880
22	환경환경공단에 대한 감면	소 계	587,26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,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) 	취 득 세	587,260
23	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	소 계	5,837,012,62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녹색건축물 인증 등급,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5~15%를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2①) 	취 득 세	5,837,012,62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15~20%를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2②) -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취득세 10%를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2③) -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·재산세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4①) 		

6. 사회복지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사회복지		합 계	297,123,434,600
	장애인에 대한 감면	소 계	22,637,602,390
2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 1~3급)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·자동차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7①) - 시각장애(4급)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·자동차세 면제(조례) 	취 득 세	22,637,602,390
	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	소 계	15,424,400
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주택,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7의2①) - 한센인 소유의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7의2②) 	취 득 세	14,450,040
		지역자원시설세	974,360
	사회복지법인·시설·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	소 계	2,887,974,880
2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복지법인, 양로원·보육원·모자원·한센병차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,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①, §22②, §22③, §22⑤) -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재산세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의4)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⑥) 	취 득 세	2,570,272,700
		등록면허세	22,004,360
		지역자원시설세	295,697,82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27	사회복지법인·시설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- 사회복지법인 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④)	소 계	540,920
		지역자원시설세	540,920
		-	-
28	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-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9) -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의2①, §22의2②) - (제주) 다자녀가정 출산 및 양육 목적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- (제주)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	소 계	26,051,507,290
		취 득 세	26,051,507,290
29	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-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1호) -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1호) - 양로시설,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2호)	소 계	10,919,250,650
		취 득 세	10,910,802,460
		지역자원시설세	8,448,190
30	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-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7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40의3 1호) -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40의3 2호) - 법률구조법인·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3①,②)	소 계	143,303,690
		취 득 세	143,303,690
31	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-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를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27①) -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%, 재산세 50%를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27②)	소 계	77,299,620
		취 득 세	77,299,620
32	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	소 계	5,734,640,750
		취 득 세	5,727,163,510
		등록면허세	157,50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①) -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,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②, §29③) -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·자동차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④) 	지역자원시설세	7,319,740
		소 계	1,652,009,300
33	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민주택(40㎡이하·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)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3②) 	취 득 세	1,652,009,300
		소 계	223,801,470,600
		취 득 세	217,586,702,010
34	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①·③)) -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④) 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3) -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4) -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2①) 	지역자원시설세	6,214,768,590
		소 계	3,170,891,250
35	주택담보노후연금보중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①) -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②) -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(25%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③) -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(6억원이하 100%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의2) 	등록면허세	3,170,891,250

7. 보건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보건		합 계	2,989,591,430
36	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- 서울대학교병원, 서울대학교치과병원, 국립대학교병원, 국립암센터,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, 주민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37, §41 ①) -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재산·지역자원시설·주민·지방소득세 면제(조례)	소 계	61,369,660
		취 득 세	61,369,660
37	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-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,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①) -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②) -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(종료)·재산세·주민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③)	소 계	2,454,450,630
		취 득 세	2,454,387,630
		등록면허세	63,000
38	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- 인구보건복지협회·한국건강관리협회·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0)	소 계	473,771,140
		취 득 세	473,771,140

8. 농림해양수산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농림해양수산		합 계	39,815,405,090
39	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- 자경농민의 농지·임야,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6①, ②) - 도로·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③) -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6④)	소 계	17,114,071,530
		취 득 세	17,089,528,030
		등록면허세	24,543,50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기계류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) -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②) - 농어업인이 영농, 가축사육, 양식,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원분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0②) -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(조특법 §106의2① 1호) - (부산·대구·인천·경기·경남)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%→50%→25% 감면 - (경기 광주)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에 대한 농지 재산세 25% 감면 - (제주)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 재산세 50% 경감 - (제주)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50% 경감 - (제주) 장기간 소유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의 재산세 세율 경감 		
	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	소 계	2,080,932,690
4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1호) -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·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% 경감,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1의2호) -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(환매취득 면제)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2호) - 영농 규모 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3호) - 제3차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3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4호) -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% 경감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5호) -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③) 	취 득 세	2,080,932,690
	농업법인에 대한 감면	소 계	9,816,484,630
4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1①) - 영농·유통·가공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50% 감면 (지방세특례 	취 득 세	9,239,081,910
		등록면허세	577,402,72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	제한법 §11② - 농업법인의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1④)		
42	임업인에 대한 감면 - 임업인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·분합하는 임야 취득세 면제, 99만㎡이하 보전산지 취득세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8③) - 임업에 대한 주민(종업원·재산)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0②) -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(조특법 §106의2① 1호)	소 계	23,125,660
		취 득 세	23,125,660
43	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- 산림유전자원보호림·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③ 2호)	소 계	23,660
		지역자원시설세	23,660
44	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-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①) -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②) -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, 어업권에 관한 등록 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③) -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(종업원·재산)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0②) -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(조특법 §106의2① 1호)	소 계	13,329,420
		취 득 세	967,120
		등록면허세	11,688,000
		지역자원시설세	674,300
45	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- 어업법인의 영여·유통·가공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2①) -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2②)	소 계	191,374,160
		취 득 세	185,411,660
		등록면허세	5,962,500
46	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·영농조합법인 등에 융자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10①~5)	소 계	5,322,985,690
		등록면허세	5,322,985,690
47	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①)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% 감면, 업무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③)	소 계	4,991,389,810
		취 득 세	4,991,389,81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48	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-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·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㎡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6)	소 계	261,687,840
		취 득 세	261,687,840

9. 산업·중소기업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산업·중소기업		합 계	463,272,567,960
49	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-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,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4년간 7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3①·③) -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3②) -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%, 재산세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60③ 1호) -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%, 재산세 10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0③ 1의2호) -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,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(조특법 §119②, §120③, §121)(삭제)	소 계	22,807,072,660
		취 득 세	22,727,808,070
		등록면허세	79,264,590
50	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-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취득한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59 ①) -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·가공·수주·판매·보관·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% 경감 (지방세특례제한법 §60①) -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2% 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60②) -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0④)	소 계	20,943,960
		취 득 세	20,943,96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51	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- 중소기업자에게 분양·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9②) -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·임대하기 위해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 경감, 재산세 3년간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59③)	소 계	96,920,620
		취 득 세	96,920,620
52	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-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7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42③) - 정부로부터 인·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·장학단체·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 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①)	소 계	66,965,800
		취 득 세	66,965,800
53	연구·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- 중견기업, 대기업,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3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46) - 시험분석·연구용 담배, 수출상담 견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(지방세법 §54① 6·7호) - (광주, 광주북구) 한국광기술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	소 계	2,549,088,280
		취 득 세	2,549,088,280
54	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- 벤처기업집적시설·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·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①) - 벤처기업집적시설·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·등록면허·재산세 중과 배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②) -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 경감하고 3년간 재산세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③) -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·재산세 37.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④) - 지식산업센터를 직접사용,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%, 재산세 37.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2 ①) -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% 경감, 재산세 37.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2 ②) - (인천·광주·강원·전남) 테크노파크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·	소 계	41,854,358,040
		취 득 세	41,854,358,04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	<p>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서울·경기) 도시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세 50% 감면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 - (제주) 토평공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5년 안에 지상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면제 - (강원·경북 문경)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 100%, 3년간 재산세 50% 감면 - (대구·경북) 우수향토기업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·재산세 50% 감면 - (서울·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·제주·경기평택·강원·충북·전북·경북·경남) 고용창출기업(고용우수)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50% 감면 		
	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	소 계	910,658,580
5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,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(조특법 §121의2) (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) 	취 득 세	910,658,580
	법인·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	소 계	3,389,462,530
5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점 및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100%, 그다음 3년간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9) - 공장을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, 그다음 3년간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80) 	취 득 세	3,291,707,230
		등록면허세	97,755,300
	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	소 계	679,863,630
5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83①) -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(주택 제외)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83②) -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(조례) - (서울 자치구)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% 감면 	취 득 세	679,863,630
	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	소 계	10,521,020
5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알뜰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비율 50%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% 감면 	취 득 세	10,521,02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	(지방세특례제한법 §62의2) - 한국전력공사의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-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감면 - (충북) 도시가스사업자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 경감		
	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	소 계	18,000
59	- 광업권의 설정·변경 등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62①) - 출원에 따라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2②) -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근로자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 2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62③)	등록면허세	18,000
	매대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	소 계	324,687,489,940
60	-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·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·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 - 자동차·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·자동차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8①) -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, 중고기계장비,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,000분의 20을 경감,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8②)	취 득 세	324,687,489,940
	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	소 계	2,431,807,970
		취 득 세	2,302,839,730
61	-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농협협동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 받은 재산의 취득세 면제,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7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2②) - 금융기관의 기업합병·분할 등을 위한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2⑤ 1·2·4·5·6·7호) - 금융기관, 한국자산관리공사, 예금보험공사, 정리금융기관, 농협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3①1·2·3·4호)	등록면허세	128,968,24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		소 계	58,426,404,640
62	<p>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2③ 2~6호, §57의2⑤ 3호)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·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2④) -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2⑥ 3호) -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「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,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3②,③,④) 	취 득 세	58,426,404,640
		소 계	5,340,992,290
63	<p>명목회사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동산투자회사·부동산집합투자기구·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중과배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80의2①) - 투자목적회사·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·부동산투자회사·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등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중과배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80의2②) - (부산·제주) 선박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0% 감면 	취 득 세	5,340,992,290

10. 수송 및 교통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수송 및 교통		합 계	108,195,956,390
64	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-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2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①) -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,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②) -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③) -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·분할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, 분할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④) 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·등록면허세·재산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⑤)	소 계	10,476,176,340
		취 득 세	10,476,176,340
65	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- 경형 승용·승합·화물차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7①·②)	소 계	31,823,107,750
		취 득 세	31,823,107,750
66	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-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(취득세액 140만원 한도) 및 공제(140만원초과 시 140만원공제)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③) - 전기자동차 2018.12.31.까지는 200만원 한도로 2019.12.31.까지는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④)	소 계	49,788,488,450
		취 득 세	49,788,488,450
67	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-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및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취득세 2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69)	소 계	26,938,800
		취 득 세	26,938,800
68	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-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70①) -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0③)	소 계	10,487,880,030
		취 득 세	10,487,880,03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69	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-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위한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취득·재산세 3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1①) -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%, 재산세 3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71②) -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 취득·재산세 2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71③) - (대구, 대구 00구)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내 입주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50% 감면 - (충북,충남,경북) 중부권·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지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	소 계	5,593,365,020
		취 득 세	5,593,365,020

11. 국토 및 지역개발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국토 및 지역개발		합 계	207,329,050,180
70	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-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·수용·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73 ①)	소 계	21,363,286,900
		취 득 세	21,363,286,900
71	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-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,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4①) - (제주) 제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취득자 등에 대한 감면(조례)	소 계	657,666,680
		취 득 세	657,666,680
72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-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,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·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74①) -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,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,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7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74③ 1~3호)	소 계	27,487,526,790
		취 득 세	27,487,526,79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	- 재개발사업·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85㎡ 이하 주택의 취득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74③4~5호)		
73	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-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20% 감면,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6①·②) - (대구 달성군, 인천 계양구·남동구·서구, 경기 평택시·여주군·동두천시)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	소 계	19,453,423,400
		취 득 세	19,453,423,400
74	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-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 목적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세 30% 감면,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7)	소 계	313,945,420
		취 득 세	313,945,420
75	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-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% 감면,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①) -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·조성 후 분양·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,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②) -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·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재산세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,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% 감면(수도권외 재산세 60% 감면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③) - 산업단지, 유지지역,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%, 재산세 35% 경감, 대수선 취득세 2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④) -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·임대 및 매각 사업, 후생복지·교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%, 재산세 50% 경감(수도권외 75% 경감)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⑥) - 산업단지 내 개축·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(조례)	소 계	137,970,811,850
		취 득 세	137,970,811,85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공단지 내 휴·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조례) - (부산, 해운대)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 - (광주 광산구)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 - (대전 유성·대덕구)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 - (강원, 동해시)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·증축시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, 3년간 50% 감면 		
76	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50%, 등록면허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50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81①②) -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.5~10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1③) 	소 계	11,984,920
		취 득 세	11,984,920
77	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 재개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35%, 재산세 25%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32의2) 	소 계	54,443,670
		취 득 세	54,443,670
78	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3년간 재산세 우대세율 0.15%(조례) - 하수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수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(조례) -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시 취득세 75% 감면(조례) 	소 계	15,960,550
		취 득 세	15,960,550

12. 과학기술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과학기술		합 계	4,059,140
79	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- 박물관·미술관·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4의2)	소 계	4,059,140
		지역자원시설세	4,059,140

13. 국가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국 가		합 계	70,621,516,960
80	국가에 대한 비과세 - 국가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방소득세·지역자원시설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1호, §90, §109①, §145① 1호) - 국가가 국방·경호·경비·교통순찰 및 소방, 환자수송·청소·오물수거와 도로공사, 우편·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26)	소 계	55,040,109,890
		취 득 세	49,669,188,400
		등록면허세	128,923,700
		지역자원시설세	5,241,997,790
81	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-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②)	소 계	15,394,702,570
		취 득 세	15,394,702,570
82	국가가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-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09②, §145②)	소 계	186,704,500
		지역자원시설세	186,704,500

14. 외국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외 국		합 계	1,534,450
83	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-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주민·재산·지역자원시설·지방소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2호, §90, §109①, §145②) - 주한외교기관,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26 3호)	소 계	1,534,450
		취 득 세	1,215,700
		지역자원시설세	318,750

15. 기타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기 타		합 계	97,039,180,450
84	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- 임시 흥행장,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·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⑤, §109③ 3호, §109③ 5호, §145②) -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09③ 5호)	소 계	355,220,960
		취 득 세	14,240,590
		지역자원시설세	340,980,370
85	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-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③ 1,2,3호) -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⑥)	소 계	17,490,724,700
		취 득 세	17,490,724,700
86	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, 「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④, §15① 1호, 지방세특례제한법§73③)	소 계	228,665,640
		취 득 세	228,665,64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87	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-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5① 2호)	소 계	24,478,877,370
		취 득 세	24,478,877,370
88	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-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5① 3·4호) -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·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1호)	소 계	46,265,442,440
		취 득 세	46,265,442,440
89	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-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5 ① 6호) - 행정구역 변경, 주민등록번호 변경,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·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·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2호) -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,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④) -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②) -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2·4호) -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매년 1월 1일 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6 3호) -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①)	소 계	5,607,170,130
		취 득 세	5,296,795,330
		등록면허세	310,374,80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8년(결산)
90	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- 레저시설, 저장시설,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, 도관시설, 급·배수시설,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시행령 §137①)	소 계	355,670
		지역자원시설세	355,670
91	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-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72①) - 별정우체국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·주민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2②)	소 계	6,869,070
		지역자원시설세	6,869,070
92	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-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7① 1호, §87② 1호) -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,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,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7① 2호, §87② 2호)	소 계	2,553,980,550
		취 득 세	2,553,980,550
93	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-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8①)	소 계	43,016,160
		취 득 세	43,016,160
94	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-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92의2)	소 계	8,857,760
		등록면허세	8,566,750
		지역자원시설세	129,080
		지방교육세	161,930